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 하고,

○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총 괄 : 1실, 12과, 2직속, 1사업소, 10읍면, 112담당
→ 1실, 12과, 2직속, 2사업소, 10읍면, 113담당

나. 기구신설 : 1사업소 3담당
○ 사업소명 :「상하수도사업소」
○ 담당신설 및 조정
□□ 신 설(+1) : 상하수도사업소「관리담당」
□□ 부서이동(3)
- 민원봉사과「건축관리담당」
→ 도시행정과「건축관리담당」
- 도시행정과 상수도담당, 하수도담당
→ 상하수도사업소「상수도담당」,「하수도담당」
□□ 명칭변경(1) :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
→ 환경보호과「수계관리담당」

4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하 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업무의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,

○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**제 출 자** : 성주군수

2. **개정이유**

○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개정(대통령령 제23093호, '11.08.24. 시행)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,

○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 등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

3. **주요내용**

□ 정원의 총수 조정 : 540명 → 547명(+7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28명 → 535명(+7)

-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2명
- 가축질병 예방에 따른 인력증원 1명
-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따른 인력증원 4명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나. 직종별 정원 조정

○ 일반직 : 421명 → 443명(+22)

■ 5급 : 25명 → 26명(+1)

■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: 392명 → 413명(+21)

○ 별정직 : 18명 → 7명(△11)

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: 18명 → 7명(△11)

○ 기능직 : 69명 → 65명(△4)

다.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: 80%이상 → 85%이상(증5%)

○ 기능직·고용직 : 16%이내 → 12%이내(△4%)

○ 별정직·정무직 : 4%이내 → 3%이내(△1%)

라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현행	4.5% 이내	14% 이내	18% 이내	63.5% 이상
조정	+0.5%	+3%	+4%	△7.5%
개정	5% 이내	17% 이내	22% 이내	56% 이상

○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현행		78% 이내	22% 이상		
조정		△35%	+35%		
개정		43% 이내	57% 이상		

4. 관련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,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제6의2호,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,

○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 등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